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990
----------	------

제안년월일 : 2021년 12월 17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1년 10월 14일 정진술 의원이 발의한(의안번호 2770)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10월 15일 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안번호 2829)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2021년 10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기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내용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방과 후 활동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항)
-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과 사용비용 지원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을 “거주시설·돌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9의2.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u>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u></p> <p><u><신 설></u></p> <p>6. ~ 9. (생략)</p> <p><u><신 설></u></p> <p>10.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지원 사업) 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거주시설·돌봄 -----</u></p> <p><u>5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u></p> <p>6. ~ 9. (현행과 같음)</p> <p><u>9의2.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u></p> <p>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